교훈: 정직



가 정 통 신 문

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제2020- 034 호

담당: 교무기획부

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

3 031-316-8712

학부모님 댁내 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<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>

방침	내용
기간	연간 <i>20일 이내</i>
신청서	학생·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<i>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.</i>
(학교홈페이지 탑재)	
보고서	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<i>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</i> 에 제출함.
(학교홈페이지 탑재)	
운영	1일 단위로 운영함. (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음.)
실시 불가능 기간 및 사유	① 시험기간(정기고사, 영어듣기평가, 교육청평가 등)
	<u>② 성적 이의 신청 기간</u>
	③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(학원수강, 상급학교 입
	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)
	④ 기타: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미인정결석처리	학교의 연간「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」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
	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'미인정 결석'처리함.
기타결석처리	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
	제출 후 '학교장'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'기타 결석'으로
	처리할 수 있음.
인솔자	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
	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
	<u>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</u>
	<u>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</u>
학습형태	① 가족여행
	② 친인척 방문
	③ 견학활동
	④ 체험활동
	⑤ 기타: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결과처리	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(해당 학년도, 졸업 후 1년간) 보관함.
	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함.

*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>

학교장허가 교환학습

해당 학년도 범위에 서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

- 보호자의 신청
- →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(업무관리시스템)
- → 「학교장허가 교환학습」의뢰서송부
- →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
- → 교환학습 실시
- → 학생의 생활기록(출결상황, 학습활동 내용 등)을 재적 학교에 통보

2020년 4월 17일

시 흥 매 화 중 학 교 장 [직인생략]